

대전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107265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변론 종결2022. 4. 27.

판결 선고2022. 6.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105,538원 및 그중 399,867,158원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별지 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3. 28.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별로 '제1신용보증약정',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2014. 3. 28. ~ 2017. 3. 27.	162,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4. 3. 28. ~ 2017. 3. 27.	231,660,000원
합계		393,66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3항, 제10조에서는 피고 A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피고 A, B은 원고에게 ① 구상금채무의 이행으로서 대위변제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의 변경에 따라 2019. 4. 1.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8%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채권의 집행보전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③ 주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 미이행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미수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4. 3.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37,400,000원(= 제1신용보증서 관련 대출금액 180,000,000원 + 제2신용보증서 관련 대출금액 257,400,000원)을 변제기 2020. 3.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최초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매년 그 신용보증기간이 1년씩 연장되어 왔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20. 4. 2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원고는 2020. 7. 7.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를 대위하여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이행금액 164,565,305원과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이행금액 235,301,853원을 변제하여 합계 399,867,158원(= 164,565,305원 + 235,301,853원)을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채권 등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서 대지급금 1,841,920원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미수위약금은 총 2,396,460원(=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미수위약금 986,200원 + 제2신용보증약정 관련 미수위약금 1,410,260원)이다.

다. 피고 A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2019. 10. 10.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0. 14. 접수 제2148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21. 12. 10. 대전지방법원 2021카합50838호로 피고 C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기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 22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12.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22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7,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의 이행으로서 404,105,538원(= 대위변제금액 399,867,158원 + 대지급금 1,841,920원 + 미수위약금 2,396,46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액 399,867,1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20. 9. 11.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10. 10.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2014. 3. 28.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최초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매년 신용보증기간이 1년씩 연장되어 온 점, ②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대상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피고 A와 G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도 2019. 8. 30. 발생하였고, G이 2019. 10.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1726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다른 채권자로부터도 채무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9. 1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카단480호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80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4213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의 무자력

갑 제7, 9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F조합, I은행,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1,849,706,490원, 소극재산 1,929,569,980원2)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1,848,206,490
	강원 고성군 J콘도미니엄 K호 중 1/10 지분	1,500,000
	적극재산 합계	1,849,706,490
소극재산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20,576,000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1,848,206,490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0
	I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8,274,590
	G에 대한 구상금채무	100,000,000
	제천세무서에 대한 국세채무	17,972,8403) 17,972,840원 = 법정기일 2019. 7. 8.자 근로소득세 423,860원 + 2019. 7. 18.자 부가가치세 16,144,490원 + 2019. 8. 6.자 근로소득세 421,620원(가산금 제외) + 2019. 9. 9.자 근로소득세 491,550원(가산금 제외) + 2019. 10. 10.자 근로소득세 491,320원(가산금 제외)
	제천시에 대한 지방세채무	2,688,0704) 2,688,070원 = 법정기일 2019. 5. 9.자 지방소득세 39,780원 + 2019. 5. 27.자 지방소득세 41,910원 + 2019. 8. 10.자 주민세 56,650원 + 2019. 9. 10.자 등록면허세 15,450원 + 2019. 9. 10.자 등록면허세 46,360원 + 2019. 9. 10.자 재산세(토지) 1,765,260원 + 2019. 9. 10.자 주민세 683,250원 + 2019. 10. 10.자 지방소득세 39,410원(가산금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납보험료채무	10,058,4805) 10,058,480원 = 고지년월 2019. 8.분부터 2019. 10.분까지 건강·요양보험료 합계 3,507,430원(2019. 10.분의 연체금 제외, 이하 같음) +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 합계 4,658,220원 + 같은 기간 고용보험료 합계 731,160원 + 같은 기간 산재보험료 합계 1,161,670원
	소극재산 합계	1,929,569,980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 A의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제3자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는 위와 같이 물상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47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A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사실상 전부 또는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인 피고 C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항변 피고 C는 평소 신뢰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뿐만 아니라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피고 A와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었으며, 피고 C로서는 피고 A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98945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이해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852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는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파주시 L 토지, M 토지 및 위 2필지 지상 건물 2동(이하 위 4개 부동산을 통틀어 'N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N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0. 피고 C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는 2019. 10. 10. 15:04, 19:34 D의 계좌로 합계 131,650,000원(= 128,350,000원 + 3,300,000원)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15:24 피고 A의 계좌로 124,6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고 그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C가 D에게 빌려준 돈은 150,000,000원에 불과하고, D 소유의 4개 부동산인 N동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N동 부동산만으로도 피고 C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 C는 대여금채권 150,000,000원의 담보로 D 소유의 N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서 더 나아가 피고 A가 소유하고 있는 담보가치 769,931,900원6) 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 C의 대여금채권액과 N동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담보가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액수에 비하여 과도한 담보를 취득하였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9. 10.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바 있고, 피고 C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 C의 주장대로 2019. 10. 10.에는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당일이어서 피고 C가 가압류 등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9. 10. 14. 전후로 위 가압류 등기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 A는 가압류채권자인 G에 대한 관계에서 2019. 8. 30.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채무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 C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과정에서 피고 A의 여신관계와 위 피고의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사 내지 확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피고 C는 피고 A와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C는 양 회사 사이에 특별한 거래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자신의 계좌거래내역 등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피고 C가 쉽게 구하기 어려운 제3자인 D의 계좌거래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피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후로 있었던 자신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의심스럽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위 피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0.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경락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C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 C가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7794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대법원 2016. 10. 27.자 2016다237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7. 3. 14. F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과

2018. 3. 8. I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8.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1. 12.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22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21. 12. 10. 피고 C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기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 225,000,000원에 관하여 그
처분 및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C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선행근저당권들이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인 피고
C에 돌아갈 배당금 225,000,000원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 C가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A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신혜영

판사이민정

판사박경환

별지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금액은 각 대출금액에 보증비율 90%를 적용한 금액이다.

[393,660,000원 = 162,000,000원(=180,000,000원×0.9) +
231,660,000원(=257,400,000원×0.9)]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여금채무) 150,000,000원의 채무자는 D이고, 피고 A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내지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17,972,840원= 법정기일 2019. 7. 8.자 근로소득세 423,860원 + 2019. 7. 18.자 부가가치세
16,144,490원 + 2019. 8. 6.자 근로소득세 421,620원(가산금 제외) + 2019. 9. 9.자 근로소득세
491,550원(가산금 제외) + 2019. 10. 10.자 근로소득세 491,320원(가산금 제외)

4) 2,688,070원 = 법정기일 2019. 5. 9.자 지방소득세 39,780원 + 2019. 5. 27.자 지방소득세
41,910원 + 2019. 8. 10.자 주민세 56,650원 + 2019. 9. 10.자 등록면허세 15,450원 + 2019.
9. 10.자 등록면허세 46,360원 + 2019. 9. 10.자 재산세(토지) 1,765,260원 + 2019. 9. 10.자
주민세 683,250원 + 2019. 10. 10.자 지방소득세 39,410원(가산금 제외)

5) 10,058,480원 = 고지년월 2019. 8.분부터 2019. 10.분까지 건강·요양보험료 합계
3,507,430원(2019. 10.분의 연체금 제외, 이하 같음) +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 합계 4,658,220원 +
같은 기간 고용보험료 합계 731,160원 + 같은 기간 산재보험료 합계 1,161,670원

6) 769,931,900원 = 2019. 10. 1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1,848,206,490원 -
선순위근저당권자인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0원 - 선순위근저당권자인 I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8,274,590원